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등〉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65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26.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법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임대 특례와 보급사업 내용이 개정 추진되면서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제5항 및 제25조의14제1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수소 설비의 설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25조의14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 ④ (생략)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 ----- ----- -----

수 있다. 1. · 2. (생략) <u><신설></u>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u>
3. (생략) ② · ③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최근 ①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경감범위를 100분의 80의 범위로 확대하고, ②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설비 설치 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 본회의에서 의결('26.8.20.)됨.¹⁾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수소 및 연료전지 등을 포함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데,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이 규율하던 내용 중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²⁾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26.3.17, 법률 제21462호)되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신에너지”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을 80%로 확대하도록 규정한 근거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신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³⁾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근거가 소멸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비율을 현행 50%의 범위에서 80% 범위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신에너지” 설비 설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명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됨.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6. 9. 18. 시행 예정)

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규정한 종전의 신재생에너지법의 근거를 동법에 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짐.⁴⁾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⁵⁾는 국유재산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 경감 범위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⁶⁾

한편,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제2218675호)⁷⁾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 병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범위 확대가 수소 보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보급사업 대상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요 집적지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보급사업 추진 시 수소

4) 참고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025.8.12., 기획재정부)에서는 「2026년 국유재산 종합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감면 확대(2.5%→1%) 추진을 결정함.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6) 참고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제2019183호)이 발의되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7)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임.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3
